

장부기장과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이면 양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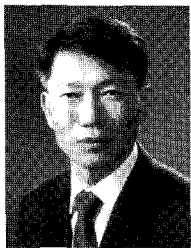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장부기장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기장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에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가 있다. 복식장부는 자산과 부채 및 그 손익거래의 내용에 대한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방식의 장부이며, 간편장부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로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일자순으로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는데,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계업의 경우 세법상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3억 원 이상이면 복식장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능한 대상자는 <표 1>에 명시되어 있다.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인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표 1〉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외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외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2. 기장과 관련한 혜택과 불이익

1) 장부를 기장한 경우의 혜택

①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세법에 따른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20%)를 연간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준다.

② 기타 필요경비의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의 기타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③ 이월결손금의 공제적용

당해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

생했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① 무기장가산세의 부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복식부기의무자, 양계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기장을 하지 않고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의 경우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③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기장과 소득세신고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여야 하므로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까지도 들게 된다.

그런데 육계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12억원 정도까지, 산란계의 경우에는 8억원 정도까지는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가 없거나, 아니면 적은 금액의 소득세가 산출된다.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어 관련한 규정들을 잘 적용 받으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들을

기장을 하지 않고도 소득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자가 기장을 해야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이와 반대로 때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의하여 기장을 해야 하기도 한다. 결국 사업자 개개인마다 자신에게 적절한 경우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장부를 기장하기로 했다면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챙겨놓아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임박해서야 기장을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이미 지난 기간 동안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결정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

[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Q.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지만 하네요. 사업을 처음 시작해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까?

A.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실지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세요.